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0

발의연월일: 2020. 8. 24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ㆍ허 영ㆍ한병도

정춘숙 · 김승남 · 이해식

김윤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16년 「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되었으며, 동 법에 따라 정부는 '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 획 및 개발계획'을 수립하고,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 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임.

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 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해서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.

「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·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,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공성과 공용수용의 필요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(안 제2조제7호 신설).
- 나.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 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함(안 제9조제1항).
- 다. 공공의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여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함(안 제31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3229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"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"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
 - 가.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
 - 나.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·연구시설용지 조 성사업 및 건축사업
 - 다.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·정보처리시설 ·지원시설·전시시설·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 업
 - 라.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·문화시설·의료복지시설·체육시설·교육시설·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
 - 마.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
 - 바. 도로・철도・항만・궤도・운하・유수지(溜水池) 및 저수지 건

설사업

사. 전기·통신·가스·유류·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.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,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대한 개발사업"을 "대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"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"개발사업시행자"를 "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. 다만,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7. "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	
	업"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	
	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	
	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.	
	가.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	
	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	
	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	
	성사업 및 건축사업	
	나.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	
	업 발전을 위한 교육・연	
	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	
	<u>건축사업</u>	
	다.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	
	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	
	<u>보처리시설·지원시설·</u>	
	전시시설ㆍ유통시설 등의	
	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	
	라.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	
	<u>향상을 위한 주거시설·문</u>	
	<u>화시설·의료복지시설·</u>	
	체육시설 • 교육시설 • 관	

제9조(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저희 수립과 지정 등) ① 해양 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 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(이하 "개발계획"이

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 조성사업 마.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

바. 도로・철도・항만・궤도· 운하・유수지(溜水池)및 저수지 건설사업

 사.
 전기・통신・가스・유류

 ·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

 시설사업

아. 하수도·폐기물처리시설,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

자.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세9조(해양산업클러스터의	개발
계획 수립과 지정 등) ①	

라 한다)을 수립하고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② ~ ⑨ (생 략)

제25조(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)
①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항만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(이하 "개발사업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- 제31조(토지수용) ① 개발사업시 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

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	-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	-
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	
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힌	- -
<u>다.</u>	
② ~ ⑨ (현행과 같음)	
제25조(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)
①	-
대한 해잉	=
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	-
	-
	-
	-
,	-
	-
1. ~ 5. (현행과 같음)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
제31조(토지수용) ① 개발사업시	_
행자는 공공의 필요가 있	-
	-

정하는 토지·물건 또는 권리 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를 수 용(사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제2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 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. 다만, 제 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 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